

2025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0.31.)

※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노인요양 시설 1일당 본인부담금

(단위 : 원)

등급	2026년 수가(2.1:1)
1등급	93,070
2등급	86,340
3,4,5등급	81,540

2) 2026년 1월1일 기준 식재료비

(단위 : 원)

등급	2025년	2026년
1식당	2,700	2,800

3)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단위 : 원)

급여비용 안내 (*31일 기준*)							
분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 포함)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 (간식비포함)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1등급	577,030	346,220	230,810	260,400	837,430	606,620	491,210
2등급	535,300	321,180	214,120	260,400	795,700	581,580	474,520
3,4,5등급	505,540	303,319.80	202,210	260,400	765,940	563,720	462,610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균상향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 2026년 01월 분(2026년 2월 청구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변동되어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10일

전남성노원장 (관인생략)